

『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채수지 의원입니다.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
유형과 양상도 교묘하게 진화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
각해지고 있습니다.
-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
있는 권리를 침해하며, 피해 학생이 자해 또는 자살 사고
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
에 지장을 겪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.
- 이미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
에서 ‘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’

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, 교육부가 발표한 ‘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’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후 ‘알리거나 도와줬다’는 응답비율은 69.8%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

- 특히 본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빠른 신고와 주변의 도움이 상황의 조기 진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조례에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신설하고, 직무상 신고의무가 중한 자를 나열하여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
-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·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-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